

제9장

정부조달

제9.1조

일반규정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「정부조달협정」(이하 “1994년도 정부조달협정”이라 한다)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국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.
2.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서,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.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,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4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, 양 당사국은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정문(이하 “개정 정부조달협정”이라 한다)¹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.
 - 가. 그 밖의 당사국의 상품,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나호 및 제2항)
 - 나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5조)
 - 다. 참가조건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8조제2항)은 다음으로 대체된다: “참가조건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, 조달기관은,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, 사전 작업 경험에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, 공급자가 그 당사

¹ 2007년 11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nefs 268(Job No[1].8274)에 포함되었다.

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

- 라. 기구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1조), 그리고
- 마. 최종 규정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2조)

5. 제4항에 따른 개정 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목적상,

- 가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협정” 이란 “장” 을 말한다. 다만, “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” 란 “비당사국” 을 말하며, “협정의 당사국” 이란 “당사국” 을 말한다.
- 나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그 밖의 당사국” 이란 “다른 한 쪽 당사국” 을 말한다.
그리고
- 다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위원회” 란 “작업반” 을 말한다.

제9.2조

적용범위

1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.

2. 이 협정의 목적상, 부속서 9에서 정의된 건설 · 운영 · 이전 방식 계약(이하 “건설 · 운영 · 이전 방식 계약” 이라 한다)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의 적용을 받는다.

제9.3조

정부조달 작업반

제15.3조(작업반)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.

- 가.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회부된 정부조달과 건설 · 운영 · 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
- 나.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과 건설 · 운영 · 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, 그리고

다.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의 논의